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290
----------	-------

발의연월일 : 2025. 12. 16.

발 의 자 : 김남희 · 허종식 · 이학영
남인순 · 김선민 · 전용기
서미화 · 박용갑 · 김남근
윤종균 · 이수진 · 오세희
전진숙 · 김 윤 · 최혁진
박민규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0년대 이후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코로나19, 엠폭스 등 신종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으로 인한 감염병 위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됨과 동시에 그 주기가 짧아지고 있음.

감염병 위기 및 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며, 그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초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감염병 위기 대응만을 위한 별도의 재원이 없어, 감염병 위기 발생 초기 단계에서 적시에 필요한 대응을 신속적으로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감염병위기대응기금’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기반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감염병 위기 초기에 확산을 억제하고

팬데믹으로의 전개를 지연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
·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10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민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5286호)과 박민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앞의 “제12장 벌칙”을 “제13장 벌칙”으로 한다.

제74조 앞의 “제11장 보칙”을 “제12장 보칙”으로 한다.

제11장(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10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장 감염병위기대응기금

제73조의2(감염병위기대응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국가는 감염병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염병위기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73조의5제1항에 따른 납부금
2. 제73조의8제1항에 따른 납입금
3. 제73조의9제2항 후단에 따른 보전금
4.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5. 정부의 출연금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

수금

제73조의3(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질병관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감염병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거나 세계보건기구에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한 경우 초기 긴급 대응을 위한 지원
2.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신종감염병·재출현 감염병에 대비한 의료·방역 물품의 비축 등 감염병 위기 대응 기반 조성
3.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신종감염병·재출현 감염병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위기 예측 등 조사·연구
4.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신종감염병·재출현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중보건위기 대응·협력
5. 해외여행자에 대한 건강·감염병 정보 제공 및 지원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7.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8. 그 밖에 감염병위기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제73조의5(출국납부금의 납부 등) ①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1천원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금(이하 “출국납부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6(출국납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부과된 출국납부금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출국납부금을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73조의7(출국납부금 부과·징수 업무의 대행) ① 질병관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국납부금 부과·징수의 업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국납부금의 부과·징수의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출국납부금의 부과·징수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3조의8(재원의 적립) ① 정부는 매년 출국납부금 징수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73조의4제1호의 용도를 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누적 적립액은 매년 해당 용도의 지출에 충당하도록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누적 적립액이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제73조의4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73조의9(잉여금 및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이를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사용하여 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제73조의10(감독 및 명령)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73조의3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 사무
2. 제73조의7제1항에 따라 출국납부금의 부과·징수의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그 대행 업무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신 설></u>	<u>제11장 감염병위기대응기금</u> <u>제73조의2(감염병위기대응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국가는 감염병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염병위기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u> <u>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u> <u>1. 제73조의5제1항에 따른 납부금</u> <u>2. 제73조의8제1항에 따른 납입금</u> <u>3. 제73조의9제2항 후단에 따른 보전금</u> <u>4.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u> <u>5. 정부의 출연금</u> <u>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u> <u>제73조의3(기금의 관리·운용)</u> <u>① 기금은 질병관리청장이 관</u>
<u><신 설></u>	

<신 설>

리 · 운용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감염병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거나 세계보건기구에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한 경우 초기 긴급 대응을 위한 지원

2.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신종감염병 · 재출현 감염병에 대비한 의료 · 방역 물품의 비축 등 감염병 위기 대응 기반 조성

3.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신

<신 설>

중감염병·재출현 감염병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위기
예측 등 조사·연구

4.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신
중감염병·재출현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중보
건위기 대응·협력

5. 해외여행자에 대한 건강·
감염병 정보 제공 및 지원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
금 상환

7.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를 위한 경비의 지출

8. 그 밖에 감염병위기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제73조의5(출국납부금의 납부
등) ①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
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람은 1천원을 기
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금(이하
“출국납부금”이라 한다)의 부
과·징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신 설>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6(출국납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부과된 출국납부금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출국납부금을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신 설>

제73조의7(출국납부금 부과·징수 업무의 대행) ① 질병관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국납부금의 부과·징수의 업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국납부금 부과·징수의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출국납부금의 부과·징수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73조의8(재원의 적립) ① 정부는 매년 출국납부금 징수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73조의4제1호의 용도를 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누적 적립액은 매년 해당 용도의 지출에 충당하도록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누적 적립액이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제73조의4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제73조의9(잉여금 및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이를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사용하여 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